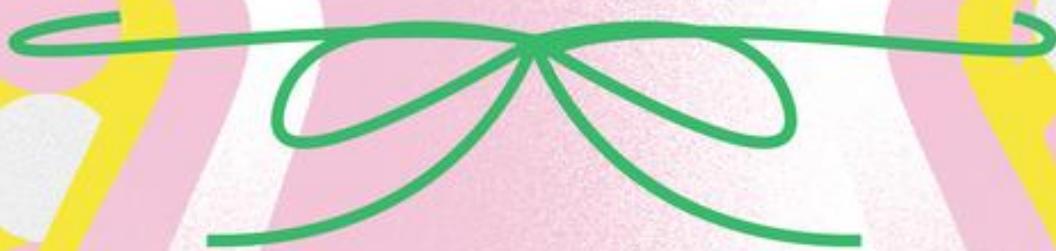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따

땀땀땀
총회는 오늘이예요

2019. 01. 26. | 3시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울림 BOOK카페

차 례

진행	2
만나서 반갑다고 세세세	3
환영인사	4
자기소개	-
만청소개	5
‘우리의 약속’	6
총회 시작!	7
의장, 서기, 진행위원 선출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회순통과	
이렇게 일했습니다	8
보고1. 총회준비팀 활동경과 보고	9
보고2. 2018년 사업보고	11
보고3. 회계감사 보고	15
보고4. 2018년 결산	16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19
심의1.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20
심의2. 2019년 예산	29
심의3. 정관 개정	30
심의4. 회비납부 시행세칙 신설	37
심의5. 대표 선출	38
심의6. 기타	39
조직과 운영원리	40
로고	41
조직도	42
함께하는 사람들 / 연락처	43
정관	44

진행

15:00-	접수
15:20-	만나서 반갑다고 세세세
15:40-	총회 시작
15:50-	이렇게 일했습니다
16:10-	덕담과 새뱃돈 증정타임
16:20-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17:50-	살림살이
18:20-	총회파티
20:30	해산

환영인사
자기소개
단체소개
우리의 약속

만나서 반갑다고 세세세

환영인사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

판청이라는 이름은 판짓하는 청년들의 준말입니다.

학업·취업·결혼처럼 사회에서 청년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다독이는 ‘판짓’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모여 관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 우리들
이곳이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게 할 작은 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창한 결과보다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기쁜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동네 친구가 되겠습니다.

판청의 로고는 청년들의 웃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판짓들로 밝게 웃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 대표 박희선 드림

판청 소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생업...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관악구,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네 문제를 고민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비싸지?
팀플은 왜 커피숍에서만 할 수 있지?
우리가 모여서 놀만한 데는 다 거기서 거기일까?
뉴스에서는 정부가 청년을 많이 지원해준다는데 나는 왜 안 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는 이렇게 판짓을 합니다.

판짓하는 청년들, ‘판청’
함께 하실 거죠?

걸어온 길

- 2017. 12.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의 전신인 ‘관악청년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결성
- 2018. 2. 관악공동행동 뿌리기금의 활동가모임지원에 선정
- 4.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관악청년허브(연대체) ‘홍청망청’ 결성
- 7. 13. 판청 비영리법인 정식등록
- 7. 27. 관악청년허브 ‘홍청망청’ 무박2일 워크숍 진행
- 9. 29. 청년네트워크파티 ‘수확여행’ 진행
- 10. 3. 희망플랜 청년페스티벌 부스참여
- 10. 26. 연대체 관악청년네트워크행사 ‘홍청망청 오픈데이’ 참여
- 11. 3. 홍청망청과 간식나눔봉사 “이게 웬 떡?” 진행
- 11. 30. 일인가구공동공간만든당(일인당) 참여
- 12. 1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표창장 수상
일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참여
- 12. 14. 1박2일 기획 워크숍 진행

우리의 약속

1. 상호 존중에 기반 한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합니다.
2. 서로의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4. 서로의 나이, 학력, 군복무 여부, 전과 등에 기반 한 폄하를 하지 않습니다.
5. 장애 유무, 신체적 특징, 질병 유무, 인종이나 피부색 등에 근거한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6. 서로의 문화, 종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식습관 등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7. 특정인이 과도한 발언과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논쟁은 지양합니다.

이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합니다.

2019년 1월 26일

만청 총회 참가자 일동

의장, 서기, 집행위원 선출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회순통과

총회 시작

보고안건

총회준비팀 활동경과 보고

2018년 사업보고

회계감사 보고

2018년 결산

이렇게 일했습니다

보고1. 총회준비팀 활동경과 보고

1. 경과

1) 기획 워크숍

일시: 2018년 12월 14~15일 / 장소: 경기도 여주시 일대

인원: 김대희, 김채린, 박희선, 송준호, 정연학

내용: 신규회원관리와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필요성 제기

민주주의 플랫폼 뼈대에 '판청' 그룹 개설, 현인원 5명으로 구성된 임시사무국 설치 결의

2) 1차 회의(긴급후속모임)

일시: 2018년 12월 27일 / 장소: 서울대입구역 인근 탐앤탐스 카페

인원: 김대희, 박희선, 송준호

내용: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분배 및 총회일정 조정

차기모임까지 사업계획서 작성과 홍보물·굿즈 시안 마련, 총회 일정 공지 및 회원정리 결의
대외협력관계 정비, 총회 준비집중의 필요성 제기되어 신정을 맞아 활동휴면공지하기로 결의

3) 회원정리 및 총회 일정 조율

일시: 2019년 1월 2일 / 장소: 유선상

인원: 정연학

내용: 10월 청년페스티벌 이후 유예되었던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 정리 및 회비 납부 안내
총회의 가일정을 공유하고 조율

4) 2차 회의

일시: 2019년 1월 2일 / 장소: 서울대입구역 인근 토즈 스튜디오

인원: 김대희, 김채린, 박희선, 송준호, 정연학

내용: 1차 회의시 결의한 업무를 종합하여 자료집 초안 작성 회원명단 최종확정

자료집 초안을 토대로 총회의 컨셉, 진행, 사업계획 발표, 예결산, 조직개편 및 임원선출 논의

5) 3차 회의

일시: 2019년 1월 10일 / 장소: 서울대입구역 인근 카페 반조

인원: 김대희, 김채린, 박희선, 송준호, 정연학

내용: 정기총회 컨셉트 및 프로그램 확정, 관련 예산 확정, 장소대관 확정

회원자격, 임원선출, 후원회 등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고 관련된 역할분담

6) 4차 회의

일시: 2019년 1월 16일 / 장소: 서울대입구역 인근 스누디 스튜디오

인원: 김대희, 김채린, 송준호, 정연학

내용: 살림살이 항목을 2018년과 2019년으로 나누어 보고·심의 안건에 넣기로 함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회원자격, 임원 구성, 조직구성, 이사회, 후원회의 내용을 보다 세밀히 수정하고 불명확했던 임기 및 선출 방식 등을 확정함

회비 납부에 대한 세칙 초안을 공유하고, 회원 권리제한과 유예 및 경감, 정지제도를 도입

7) 5차 회의

일시: 2019년 1월 21일 / 장소: 서울대입구역 인근 토즈 스테디룸

인원: 김대희, 김채린, 박희선, 송준호, 정연화

내용: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회원 권리의 정지에 대하여 논의

정관 개정안 및 회비납부 시행세칙 제정안 확정

총회 참석 인원 점검, 총회 당일 프로그램 구성 및 준비일정 확정, 사업계획 확정, 감사결과 공유 등의 활동을 함

2. 예산

구분	항목	수량	단가	금액	산출내역
홍보인쇄비	종이포스터	50	389.4	19,470	
	현수막	1	23,980	23,980	
	핀버튼	50	484	24,200	
	원형스티커	100	108.9	10,890	
	자료집 제본	30	3,000	90,000	
다과비	다과	1	30,000	30,000	
사무용품비	제기, 공기 등	1	5,000	5,000	
	가위, 칼 등	1	5,000	5,000	
	테이프 등	1	5,000	5,000	
예비비	-	1	20,000	20,000	
합계				233,540	

보고2. 2018년 사업보고

1. 자체사업

1) 수확여행 (재정지원: 관악공동행동)

- 일 시 : 2018. 09. 29.
- 장 소 : 도토리홀
- 참여자 : 약 20여명
- 내 용 : 판청 설립에 따라 판청 소개 및 진행 및 관내 청년 활동가들과의 관계 형성 및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됨



2) 1박 2일 워크숍

- 일시 : 2018.12.14.-15.
- 장소 : 여주 일대
- 내용
 -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팀원들 간 네트워크 및 2019년도 사업계획 논의
 - 신규회원관리와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필요성 제기



3) 네트워크 모임 (일부재정지원: 관악공동행동 뿌리기금)

- 일시 : 2017. 12. ~ 현재
- 횟수 : 약 30여회 이상
- 내용 : 관악청년네트워크 '탄청' 소속 팀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2. 대외사업 참여

1) 녹두ZIP 주최 주민간담회

- 일시 : 2018.11.22.
- 장소 : 서울대학교 캠퍼스 타운 녹두ZIP
- 내용
 -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두ZIP 내에서 주민간담회 참여 및 연계 방안 논의
 - 대학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청년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음)

2) 제2회 청년페스티벌

- 일시 : 2018.10.03.
- 장소 : 관악구청 앞 광장
- 내용
 -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 소개 부스 운영
 - 관악청년 대표로 판청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발언



3) 관악구 청년정책포럼

- 일시 : 2018.10.15.
- 장소 : 관악구청 8층 대강당
- 내용
 - 청년지원기본조례의 타 지역구 사례와 관악청년의 실태 논의
 - 질의응답 및 청년정책과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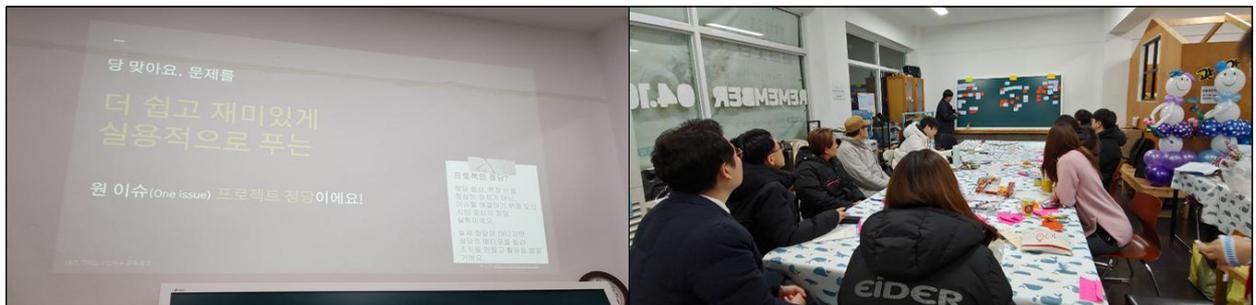
4) 관악청년정책위원회

- 일시 : 2018.12.21.
- 장소 :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
- 내용
 - 판청 대표 박희선 신규위원으로 참가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분과회의의 구성 토론

3. 연대사업

1) 1인가구공동공간만든당(일인당)

- 내용
 -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에 ‘판청’ 그룹 개설
 - 일인당 프로젝트와 판청 연계 및 참여 (약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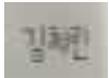


2) 흥청망청

- 내용
 - 흥청망청 워크숍 및 회의(약 10회) : 청년 문제를 필두로 한 판청을 포함한 연대 모임
 - 흥청망청 오픈파티(18.10.26.)



보고3. 회계감사 보고

<p>관악청년네트워크 ‘탄청’ 2018년 감사 보고서</p>		<p>2019년 1월 21일</p>	
감사대상	관악청년네트워크 ‘탄청’ 사무국	감사인 성명	김체린 
감사 실시기간	2019년 1월 16~21일	기 타	*임시회계감사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관악청년네트워크 ‘탄청’의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사업의 목적과 사업진행 및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발전 방향 지표 마련. • 2018년 회계결산 보고 및 수지결산서 감사를 통한 조직 운영의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 마련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3장 16조에 의거하여 전년도 사업 및 결산서 감사 진행 • 감사일시 : 2019년 1월 21일 • 장소 : 신림역 인근 카페 • 감사 : 김체린 • 보고절차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 자산부채보고서 •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실적서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감사 : 2018년 수입·지출 결산이 적합하나 다소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비가 부실해보임. • 자산부채보고서 감사 : 자산부채에 대한 이상 없음. •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감사 : 청년 네트워크 단체를 형성한 것에 충실함. • 사업실적서 감사 : 2018년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업수행이 적합 		

보고4. 2018년 결산

I. 개요

- 설립 일 : 2018. 07. 13.
- 구성 원 : 10인(2019. 01. 03. 기준)
- 월 회 비 : 당해연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시급(2018년 기준 7,530원, 2019년 기준 8,350원)
- 진행사업
 - 관악청년들의 우리 문제 풀기 '수확여행' (관악공동행동 청년네트워크사업 위탁 운영)
 - 관악청년페스티벌 '관악입니다 청년하세요' (희망플랜신림센터 진행사업 부스참여)
 - 수확여행 기부수익 전달행사 '이게 웬 떡'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간식 등 현물기부)

I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	세출	미지급금	비고
846,515	716,330	42,400	미지급금 42,400원은 수확여행 기부경매 수익금 잔액으로, 19년 1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 예정

III.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

○ 세입내역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세입	회비	173,190	5인 6개월분
	특별기금	12,350	9월 행사진행비 총당
	뿌리기금 잔액	222,898	관악공동행동 뿌리기금
	기부경매 수익	338,000	기부금 잔액 42,400원
	청년페스티벌 부스지원금	100,000	
	결산이자	77	
	합 계	846,438	

○ 세출내역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세출	이계 웬 떡 행사 경비	295,600	
	회의비	40,330	
	주민세	62,500	법인 균등분 납부
	교통비	15,500	
	홍보인쇄비	25,000	명함 인쇄
	지급수수료	9,400	OTP, 공인인증서 발급
	미지급금 상계	268,000	박희선, 김대희 2인 사유 : 지출 건 발생 당시 법인통장 잔액 부족으로 사비 지출 후 상계함
	합 계	716,330	

○ 기타

- 2018년도 회비 미납금 총 52,710원(김체린 3회, 김대희 2회, 박희선 1회, 정연학 1회)은 1월 1일자로 모두 납부함.
- 2018년도 9월 특별기금 미납금 총 2,470원(송준호 1회)은 1월 3일자로 모두 납부함.
- 2018년도 9월 특별기금 초과납부금 총 2,470원(김대희 1회)는 기부 처리함.

IV.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예산)	세출(실지출)	미사용액	비고
1,485,000	914,450	570,550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직접지출 하였으므로 단청 회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미사용액은 반납 처리하였음.

V.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

○ 세입(예산)내역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세입 (예산)	회의비	80,000	
	물품구입비	100,000	
	영화콘텐츠구입비	200,000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세입 (예산)	식대	320,000	
	간담회비	80,000	
	홍보인쇄비	170,000	
	장소대관비	400,000	
	부가세	135,000	
	합계	1,485,000	

○ 세출내역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세출 (실지출)	회의비	80,000	
	물품구입비	283,400	
	식대	218,200	
	간담회비	43,690	
	홍보인쇄비	149,160	
	장소대관비	140,000	
	합계	914,450	

○ 기타

- 참여인원 : 21인(스태프 5인 포함)
- 행사 진행일 : 9월 29일 토요일
- 행사장소 : 도토리홀(서울 관악구 관천로 37-1 지하)
- 참여 대상 : 관악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청년(단체 및 개인)
- 기존 예산 : 1,485,000원
- 최종 결산금액 : 914,450 (▼ 570,550)
- 미사용항목 : 영화구입비(200,000원)

VI 자산 및 부채

1) 자산

- 유동자산-당좌자산-보통예금 : 218,945원
- 단청 소개 리플렛 160장

2) 부채

없음.

심의안건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2019년 예산

정관 개정

회비납부 시행세칙 신설

대표 선출

기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심의1.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1.사업 방향

1)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개요

전체인구의 40%에 이르는 관악 청년은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산발적인 만남을 제외하면, 일반 청년들 사이의 커뮤니티는 없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판청은 다양한 방법과 분야를 통해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 사업계획

- 청년소셜다이닝 ‘나플리(나의 플레이리스트)’
- 청년마을학교 ‘소소한클래스’

2) 재정독립성 확보

○ 개요

비영리 청년단체를 표방한 판청의 재정수입은 대부분이 회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의 실행과 단체의 존속이 가능하려면 회비 수입이 절대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청년커뮤니티,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 회원확충 3개년계획 (2019년: 회원 50명, 후원회원 50명 / 2020년: 회원 100명, 후원회원 100명 / 2021년: 회원 200명, 후원회원 200명)
- 관악의 청년커뮤니티 및 연대체의 사업 또는 비영리성 목적의 지원사업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청년희망팀, 관악구 청년정책팀,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업

3) 운영 안정화

○ 개요

단체의 존재를 지속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며,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근자의 고용 및 거점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반상근 또는 상근 체제와 거점공간 마련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 사업계획

- 청년거점공간 공모사업 “집 좀 주세요”
- 관악의 청년커뮤니티 및 연대체의 사업 또는 비영리성 목적의 지원사업

4) 홍보 및 기록

○ 개요

단체 설립 후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단체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과 소통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단청의 활동을 아카이브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 사업계획

- 팟캐스트 ‘말말말’
- 관악 청년 사람책 ‘오늘, 우리가, 여기서’

2. 구체사업

○ 개요

구체 사업은 현재까지 제출된 청년소셜다이닝 ‘나플리(나의 플레이리스트)’, 청년마을학교 ‘소소한클래스’, 팟캐스트 ‘말말말’, 관악 청년 사람책 ‘오늘, 우리가, 여기서’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2019년의 단기 사업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세심하게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청년 유관단체 및 기관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이르는 사업계획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1



사업명	나의 플레이 리스트(나플리)
제안자	김대희
제안일	2019년 01월 02일

내용

기획배경 및 목적	'나플리'는 뮤직 소셜다이닝의 일환입니다. 힐링의 부재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음악토크와 이와 연계한 아트워크 만들기 활동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업기간	2019년 3월~12월
사업주기	매달 1회, 금요일 혹은 토요일, 약 3시간~4시간
사업대상	관악구 일대 청년층
장소	서울대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ZIP, 청년공간 이음, 카페 공간더인 등
필요인원	총2명 (진행 및 사전준비 2명) 참여자 8~10명
세부내용	<p>매 달 특정한 상황이 담긴 주제를 한 가지 선정합니다. 참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듣고싶은 곡을 정하여 참여신청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참여자들은 간단한 다과류(과자, 핑거푸드 등)를 함께 나눠 먹으며 주제에 대한 음악토크와 아트워크 만들기 활동을 나눕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예시1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소개 및 행사 동안 불릴 닉네임 선정- 떡메모지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이유를 적어서 벽에 붙이기(예시2 참고)- 식사와 함께 본인이 적어낸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보기- 식사를 마친 후, 마음에 드는 가사를 1)종이에 직접 써보고 노래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p>참여자들이 선정한 가장 좋아하는 곡은 행사기간 동안 계속 재생이 되며 행사가 종료되면 참가자들의 선정 곡이 적힌 '나플리 플레이리스트' SNS이미지를 탄청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합니다.(별첨1 참고)</p> <p>예시1) 이 달의 나플리 주제는 '퇴사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사직서가 간절하게 끌리던 어느날! 여러분이 가장 듣고싶었던 곡을 적어서 제출해주세요.</p> <p>예시2) 저는 퇴사를 하고 싶을 때 '말달리자'란 곡을 들어요. '닥쳐!'가 반복되는게 누군가에게 하고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아요</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사용에 대한 각 공간과의 협의 필요- 다과를 탄청에서 구입할지, 참여자가 가져오는 형태로 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매 회 주제를 선정해야함
- 참여신청서 품 제작 필요

예산(1회 기준)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사업비	공간대여비 (청년공간 이음 기준)	1회	60,000원 <small>(시간당 10,000원*준비시간 포함 6시간 대관)</small>	54,000원	- 주말엔 6시까지 운영
	물품구입비 (펜 및 다과)	펜 : 2팩 <small>(다이소 싸인펜 한팩 기준)</small> 다과 : 5팩 <small>(노브랜드 과자 및 레토르트 식품류 기준)</small>	2,000원 <small>(1,000원*2팩)</small> 25,000원 <small>(5,000원*5팩)</small>	펜 : 1,800원 다과 : 약 22,500원	-펜은 한번 구입하면 매 회 사용 가능 -떡메모지, 아트워크용 종이, 색연필은 김대희의 일러스트레이 션페어 당시 남은 나무도마 형태의 떡메모지 사용(약 20팩 구비)
	교통비	0	0		
	홍보인쇄물 제작비 (레드프린팅 기준)	A2 포스터 : 50부 나플리 소개 엽서크기 한장 리플렛 : 90장 <small>(인원 별 1장씩 10장*9회)</small> 2m*2m 현수막 : 1장 웰컴굿즈 7cm*7c m 원형 스티커 : 90개 <small>(인원 별 1개씩*9회)</small>	포스터 : 68,090원 리플렛 : 31,570원 현수막 : 24,530원 스티커 : 10,010원	포스터 : 61,900원 리플렛 : 28,700원 현수막 : 38,300원 스티커 : 9,100원	- 현수막, 리플렛, 스티커는 한번에 인쇄하여 매 회 사용 -포스터는 아트지, 리플렛은 량데부지, 스티커는 유포지 -현수막은 타공, 로프포함 가격
인건비	기획비	?			-논의 필요

1) 다이소 캘리그래피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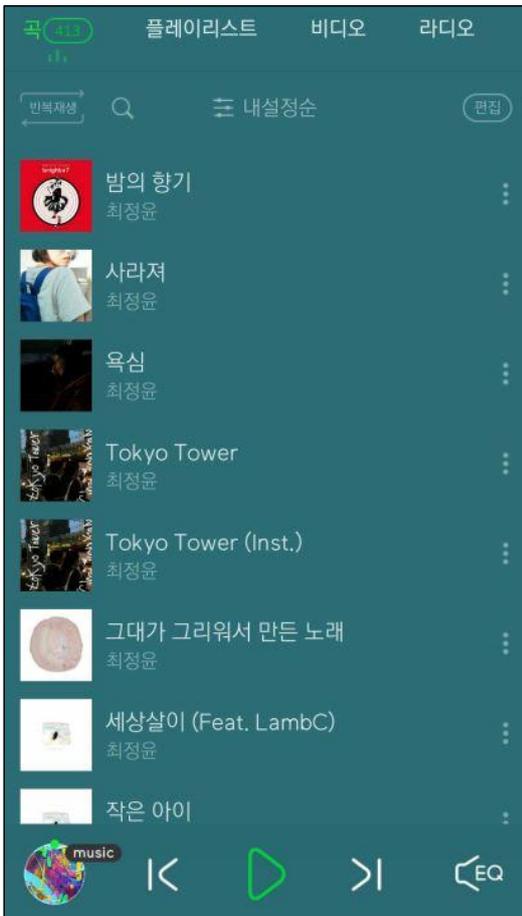
합계금액(VAT 포함)

금 이십이만천이백원

221,200원

총 9회 기준
1,990,800원
금 백구십구만
팔백원

별첨 1



사업계획서2



사업명	소소한 클래스(小小한 Class)
제안자	송준호(소다)
제안일	2019년 1월 21일

내용

기획배경 및 목적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배워?!”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진지하게 배운다. 모두는 작게 보면 쓸모없지만 크게 보면 1인 가구, 청소년층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스킬들이다. 쓸모의 재정의.
사업기간	2019년 3월~6월 (4개월)
사업주기	정기클래스 - 주1회, 매주 토요일, 2시간 원데이클래스 - 1회, 주말, 2시간
사업대상	고시촌(대학동, 서림동) 일대 청소년
장소	서울대 스타트업캠퍼스 녹두ZIP 1층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17) 셰어어스 에덴 1층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30)
필요인원	총 2명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세부내용	하찮은클래스(1회) - ‘개강파티나도인싸! 숟가락으로병따기’, ‘엄마몰래컴퓨터하기’, ‘전 잘 뒤집기’, ‘극강의 계란말이’ 당일치기클래스(1회)- 관악건축여행, 향초만들기, 힙스런웹자보마스터, 뿌수기클래스(정기) - 커피·묵독·영화감상·타로 배우기·캘리그래피 모임
기타	장소사용, 강사페이에 대한 협의 필요

예산 (1회 강의 기준)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사업비	장소대여비	1	100,000	100,000	협의에 따라 상이
	물품구입비	1	100,000	100,000	
	홍보인쇄물 제작비	1	30,000	30,000	
인건비	주강사 강의료	1	150,000	150,000	
진행비	예비비	1	20,000	20,000	
합계금액(VAT 포함)		금 사십만 원		400,000	

※자본성 경비 외 재료비는 참가비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지 않음.

※보조강사는 판청 멤버가 관리감독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음.

사업계획서3

사업명	팟캐스트「주말 할말 아무말」
제안자	김체린(자몽)
제안일	2019년 1월 21일
내용	
기획배경 및 목적	- 단짓하는 청년들 ‘딴청’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2030 청년들과의 소통 - 딴청 활동 확장 및 네트워크
사업기간	2019년 2월~11월 (10개월)
사업주기	녹음 :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 2시간 (2~11월) 편집 : 2~11월
사업대상	관악청년네트워크 딴청
장소	미정
필요인원	5명 (녹음, 편집)
세부내용	2019. 1월 : 관련 기획안 수립 2019. 2월~11월 : 녹음 및 편집 진행
기타	편집하는 역할을 정해야함.

예산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사업비	방송용 마이크	5개	19,000*5	95,000	5인 기준
합계금액(VAT 포함)		금 구만오천 원		95,000	

※첨부

-마이크 정보



사업계획서4



사업명	관악 청년 사람책 「오늘, 우리가, 여기서」(가칭)
제안자	박희선(피카피카)
제안일	2019년 1월 21일

내용

기획배경 및 목적	<p>관악구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2030 청년들. 동네를 지나며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관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마을에서의 시간을 아카이브화 하고자 함.</p> <p>관악을 그저 현실의 고통을 참아내며 잠깐 머무르다 떠나는 정거장이 아닌 삶의 한 배경으로 만들고자 함.</p>
-----------	---

관악 청년 사람책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평범한 동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이야기라 하더라도 관악이라는 지역에 함께 발 딛고 살아가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묶는다면 그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관악은 좋은 곳이니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라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관악을 떠나든지 이곳에서의 기억이 살아온 시간의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며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2019년 2월~12월 (11개월)
사업주기	대상자 인터뷰 :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 2시간 (2~10월) 편집 및 출간작업 : 10~12월
사업대상	관악에 생활 기반을 둔 청년 전체
장소	미정
필요인원	총4명 (인터뷰어, 편집 및 교정, 디자인 등)
세부내용	2019. 1월 : 관련 기획안 수립 2019. 2월~10월 : 대상자 인터뷰 진행 2019. 10월~ 12월 : 편집·교정·디자인 작업 2019. 12월 : 최종 출간 및 출판기념회

기타	인터뷰를 진행할 거점 장소 필요 출판 사업의 특성상 비용적인 부담이 큼 마을 공모사업, 청년 지원 사업 등 보조금과 매칭 하는 방안 구상 필요
----	---

예산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사업비	인터뷰 사례비	20	30,000	600,000	
	인쇄비	1	1,500,000	1,500,000	예시 단가
인건비	활동비	1	1,500,000	1,500,000	
진행비	예비비	1	100,000	100,000	
합계금액(VAT 포함)		금 삼백칠십만 원		3,700,000	

심의2. 2019년 예산

〈주문사항〉 정관 39조에 의거하여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1. 개요

구분			예산	비고 (원*명*회차)	
관	항	목			
수입	매출액	회비	1,002,000	8,530*10*12	
		정기후원금	1,200,000	10,000*10*12	
		부정기후원금	1,000,000	후원의밤	
		사업수입	2,000,000	사업계획서 참고	
	정부·지방단체 보조금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2,000,00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2,000,000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00,000		
		기타 지원 및 공모사업	1,000,000		
	총계			12,202,000	
	지출	판매와관리비	세금과공과금	65,000	주민세
회의비			1,200,000	5,000*10*24	
홍보인쇄비			300,000		
사무용품비			100,000		
소모품비			100,000		
잡비			100,000		
사업비		관악 청년 사람책 「오늘, 우리가, 여기서」	3,700,000	사업계획서 참고	
		나의 플레이 리스트(나플리)	221,200	사업계획서 참고	
		팟캐스트	95,000	사업계획서 참고	
		소소한 클래스(小小한 Class)	400,000	사업계획서 참고	
예비비			200,000		
총계			6,481,200		
잔액				5,720,800	

○ 기타

- 회비수입은 현재 회원을 기준한 것이며, 회원 증가에 따른 추가 수입은 예측하지 않음.

심의3. 정관 개정

〈주문사항〉 정관 제51조에 따라 본 정관의 개정을 의결해 주십시오.

1) 회원의 자격 수정

○ 목적 : 회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현행	개정안
<p>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일반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하고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원은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2. 일반회원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연령대에 속하며 관악구를 생활·활동기반으로 하는 청년으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p>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원은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원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p>제5조(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9.01.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의사로 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 2.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관악구를 생활·활동기반으로 하는 자 3. (삭제) 4. 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회비로 납부한 자 <p>제6조 (권리와 의무) (개정 2019.01.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은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삭제) 3. 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이와 관련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2) 임원에 대한 개정

○ 목적 : 임원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및 선출방식의 탄력성 제고하고 내용별 조문 정리

현행	개정안
<p>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1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1명</p> <p>② 단체의 재산 및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 임명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p>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대표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2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제9조 (임원의 종류와 자격) (개정 2019.01.00.) ①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부대표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2명 이내</p> <p>② 임원은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자격이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0조 (임원의 직무) (본조 이동 2019.01.00.)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대표직이 궐위시 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2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대표,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p>

현행	개정안
<p>제10조 (임원의 선임)</p> <p>① 대표는 총회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방식을 통해 선출한다. 다만,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 대표의 선출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후임 대표는 1달 이내로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p> <p>② 부대표 및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선출한다.</p> <p>제11조 (임원의 임기)</p> <p>① 대표단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 대표단은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을 지칭한다.</p> <p>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④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p> <p>제15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가 부재할 경우에는 부대표, 사무국장 순으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 (업무의 계속성)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출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p>	<p>제11조 (임원의 선임) (개정 2019.01.00.)</p> <p>① 대표는 총회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방식을 통해 선출한다.</p> <p>② 부대표, 사무국장, 감사는 대표가 지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p> <p>제12조 (임원의 임기) (개정 2019.01.00.)</p> <p>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 보궐선거 등으로 임기 중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이하 삭제)</p> <p>제13조 (임원의 부재 및 궐위) 임원이 부재 및 궐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대표의 부재가 발생한 경우, 부대표, 사무국장, 이사 중 이사회를 통하여 호선된 자 순으로 대행한다.</p> <p>② 대표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 직무대행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시행하여 대표를 선출한다.</p> <p>③ 대표 외의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대표는 지체 없이 1개월 이내에 새로 지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임명한다.</p> <p>④ 단 대표의 잔여임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보궐 선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 (업무의 계속성)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출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p>

3) 이사의 선임 조항 신설

- 목적 : 2기 대표단 선출 직후, 이사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꾸린다. 이로써 창립총회의 1기 임원, 이사회 활동을 종료한다.

현행	개정안
제2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기타 필요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p>제2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당연직 :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② 선출직 : 기타 필요로 선임된 이사 ③ 이사회 의장은 본 단체의 대표가 맡는다.</p> <p>제24조의1 (이사의 선임) ① 이 단체의 이사는 총회에서 의결로서 선임한다. ② 이 단체의 이사는 의장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한다.</p> <p>제24조의2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p>

4) 총회의 정족수 개정

- 목적 : 회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개정

현행	개정안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적절한 논의 기간을 거쳐 재투표를 실시한다.	<p>제20조(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9.01.00.)</p> <p>① 의사정족수는 총회소집 공고일 기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지 아니한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적절한 논의를 거쳐 재투표한다.</p>

5) 조직개편

○목적 : 회원 활동 활성화 및 요건 간소화

현행	개정안
<p>제46조 (위원회 신설 및 해산)</p> <p>① 제3조의 목적 및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무국 휘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하나의 위원회는 4인 이상의 활동가와 1인 이상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p> <p>③ 위원회 설립 및 해산은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되며, 대표의 최종 동의로 진행된다.</p>	<p>제46조 (실무단의 조성 및 해단) (개정 2019.01.00.)</p> <p>① 이 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내에 실무단을 둘 수 있다.</p> <p>② 회원이라면 누구나 대표에게 실무단 조성 및 해단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단 조성과 해단의 요청을 받은 대표는 이를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단, 기한만료로 인한 해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해단한다.</p> <p>③ 하나의 실무단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실무단장은 반드시 회원으로 한다.</p>

6) 후원회 관련 전부개정

○ 목적 : 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및 대표성 강화

현행	개정안
제9장 후원회	제9장 후원회
<p>제49조 (후원회원)</p> <p>이 단체의 후원인 및 후원단체 선정 및 관리 등은 대표단에서 총괄한다. 후원인 및 후원단체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p>	<p>제49조 (정의) (개정 2019.01.00.)</p> <p>① 후원회는 선의로 이 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임으로 한다.</p> <p>② 후원회원은 후원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p> <p>제49조의1 (후원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후원회를 구성하는 후원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01.00.)</p> <p>① 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고 선의의 목적으로 이 단체를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p> <p>② 이 단체에 소정의 금액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p>

현행	개정안
	<p>제49조의2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p> <p>① 후원회원은 이 단체에 약정한 후원을 할 의무가 있다.</p> <p>② 후원회원은 이 단체의 후원회에 대하여 의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p> <p>③ 후원회원은 이 단체에 후원회장을 통하여 의사 개진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49조의3 (후원회의 임원) (신설 2019.01.00.)</p> <p>① (후원회장) 대표는 필요하다면 후원회원을 소집하여 후원회장의 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원회장 선출을 요청받은 후원회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후원회장을 선출한다.</p> <p>② (후원회 부회장) 후원회장은 필요하다면 후원회원들 중에서 후원회장의 역할을 보조할 후원회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p> <p>③ 위 항에서 선출된 임원이 단체자격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이나 그 단체의 회원 중 지명된 대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p> <p>제49조의4 (후원회원의 관리) (신설 2019.01.00)</p> <p>① 이 단체의 대표는 후원회에 대한 가입승인, 제명 등의 관리를 총괄한다.</p> <p>② 후원회에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대표는 후원회원(또는 이를 대표한 후원회장)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p>

7) 정관 변경에 대한 임시조치

○ 목적 : 총회 결의에서 주무관청 허가 사이의 기간에 대한 임시조치 병기

현행	개정안
제51조 (정관 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제51조 (정관 개정) 본 단체의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정관 개정 요청을 받은 대표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2/3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대표는 주무관청 허가일 전까지 의결된 개정안으로 집행할 수 있다.</p> <p>③ 주무관청에서 개정 정관을 반려한 경우, 정관은 의결 이전으로 복원된다. 또한 대표는 기 집행된 단체의 행위들을 정정하여야 한다.</p>

8) 상기 정관 개정 등에 따른 자구수정

○ 목적

- 1) 조문 신설, 이동, 병합, 분리 등이 발생함에 따라 조문번호의 삽입, 밀림이 발생하여 순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 2) 단순 오타(사무총장→사무국장, 징수→납부 등)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3) 이에 따른 수정은 부칙에 정리함

심의4. 회비 수납 시행세칙 제정

〈주문사항〉 정관 제5조, 제6조,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승인해주십시오.

회비 수납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정관 제5조(자격), 제6조(권리와 의무) 제54조(시행세칙)에 따라 이 단체의 운영을 위한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종류) 이 단체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3조 (금액)

- ① 이 단체의 일반회비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② 이 단체의 특별회비는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하여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조 (납부시기)

- ① 일반회비는 매월 1일에 납부한다. 단, 신규 회원의 최초 회비는 가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②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의결된 특별회의 수납 계획에 따른다.

제5조 (납부 방법) 회원은 이 단체의 계좌에 입금(송금)함으로써 회비를 납부한다.

제6조 (회비납부 고지 및 독려)

- ① 대표는 회원이 가입할 때 당해 연도 회비를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 ② 대표는 회원에게 매년 12월에 차기년도 회비 금액을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 ③ 대표는 회비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납입계좌(혹은 이 단체의 통장사본) 등을 통화, 문자 혹은 전자우편을 회원에게 발송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에게 ③항에 따라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이 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영수증) 대표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납부영수증을 발행한다.

제8조 (납부정지)

-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기 어렵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대표는 납부정지를 요청한 회원과 협의하여 최장 3개월간 정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납부정지는 이 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9조 (체납회원의 처리)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의) 체납은 제8조에 의하지 않고 일반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② 체납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대표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 ③ 체납된 일반회비를 일시납부하고 사무국장이 확인하면 회원의 권리를 복원한다.
- ④ 대표는 체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회원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해당회원을 탈퇴처리하고 이 사실을 해당회원에게 제6조의 고지방법을 준용하여 알린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①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납부한 회비는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심의5. 대표 선출

〈주문사항〉 정관 10조와 21조에 의거하여 대표를 선출해 주십시오.

심의회6. 기 타

로고
조직도
함께하는 사람들/연락처
관악청년네트워크 단청 정관

조직과 운영원리

로 고

관악청년네트워크

탄칭

관악청년네트워크 탄칭의 로고는 청년들의 웃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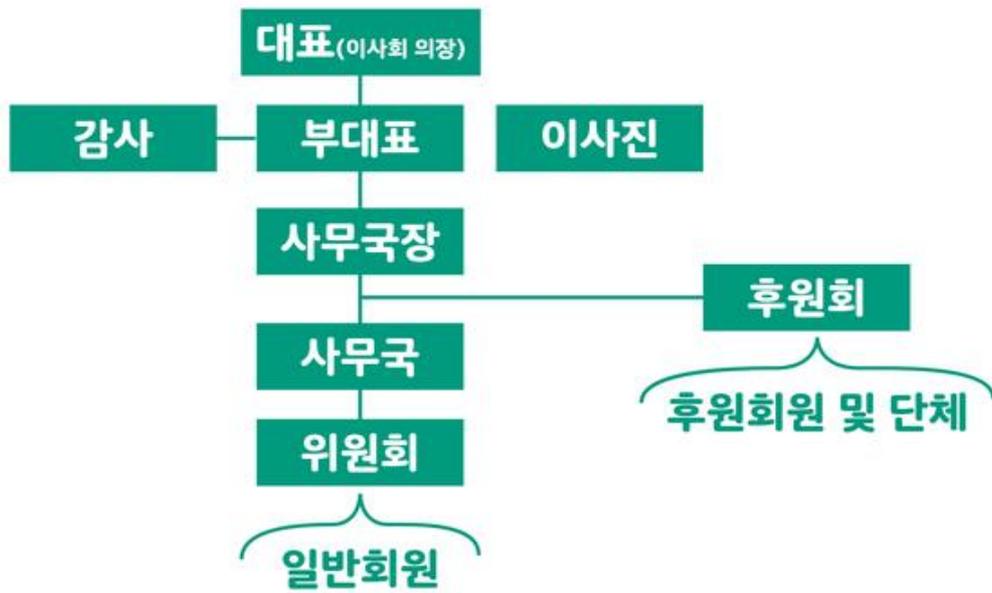


●	●	●
#009a7e	#e1e11d	#6d6d6d
R : 0 G : 154 B : 126	R : 225 G : 225 B : 29	R : 109 G : 109 B : 109

사용 예시 |



조직도



함께하는 사람들

회원

박희선(피카피카) /

김대희(hee) /

송준호(소다) /

김체린(자몽) /

정연학(달빛소년) /

원유선 /

김연지 /

이수지 /

장두리 /

김명철 /

후원회원 및 단체

(함께 만들어가요)

연락처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wanddan/>

PARTI. <https://ddan.parti.xyz/>

E-MAIL. ddancheong@gmail.com

대표번호. 사무국장 / 010-0000-0000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로44나길 18. 1층. (착한여행 사옥 1층)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①이 단체는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이라 하고 약칭 “판청” (이하 ‘단체’)이라 한다.
- ②이 단체의 영문 명칭은 “Gwanak Youth Network Ddancheong”으로 하고 약칭은 “GYND”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나길 18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단체는 관악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들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관계망 형성과 놀이·연구·정책제안·문화예술·기타 공익활동 등의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공동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대두되는 청년문제에 당사자인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이다.

제4조(사업) 이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청년 사회관계망 형성 및 확산 위한 사업
2.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사업
3.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소통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기본권 보호와 생활문화적 욕구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사업
5. 기타 공익적 성격의 청년 관련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하고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은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2. 일반회원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연령대에 속하며 관악구를 생활·활동기반으로 하는 청년으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일반회원은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 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원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 ①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 또는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대표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②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상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활동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이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1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1명

②단체의 재산 및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임원 임명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대표는 총회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방식을 통해 선출한다. 다만,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 대표의 선출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후임 대표는 1달 이내로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②부대표 및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하고 이사의 승인을 통해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대표단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대표단은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을 지칭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계속성)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출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의 의장이 된다.

②부대표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가 부재할 경우에는 부대표, 사무국장 순으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2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원은 이 단체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수시 소집하고 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

- ②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회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적절한 논의기간을 거쳐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대표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단체와 의장 또는 회원 자신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의사록의 공증)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장과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 2인을 선임하여 기명날인하고 공증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기타 필요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제25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등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의 임면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기타 단체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사무국장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진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30조(의결제척 사유) 의장과 이사는 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

- ①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단체의 명의로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2조(재산의 관리)

-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 ②단체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③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이 단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조(재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의 과실금
3. 기부금, 후원금 및 출연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 기타 수익

제35조(회계의 구분 및 원칙) 이 단체의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하며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단체의 재산은 이 단체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단체의 임원
 2.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단체
 3. 이 단체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 편성 및 결산)

- ① 이 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 단체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1조(기부금 및 후원금 공개) 이 단체는 총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2조(차입금) 이 단체가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조직 및 운영

제45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영입 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 단체에 공로가 있거나, 청년 및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이사회 결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제46조(위원회 신설 및 해산)

- ① 제3조의 목적 및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무국 휘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하나의 위원회는 4인 이상의 활동가와 1인 이상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③ 위원회 설립 및 해산은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되며, 대표의 최종 동의로 진행된다.

제47조(운영위원회)

- ① 이 단체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소집, 의결 등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8조(사무국)

- ①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9장 후원회

제49조(후원회원)

이 단체의 후원인 및 후원단체 선정 및 관리 등은 대표단에서 총괄한다. 후원인 및 후원단체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단체해산)

- ① 이 단체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② 단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51조(정관 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규정 제정)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이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4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최초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단체설립준비행위는 단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직인) 이 단체의 직인은 붙임 1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8.05.27.

발기인 김대희
 발기인 김체린
 발기인 박희선
 발기인 송준호
 발기인 정연학